

의안번호	2126561
의 퇴 인	고용진 의원
회 답 일	2024.3.7.
추 계 번호	24E019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소득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비를 포함(안 제59조의4제4항)

- 현행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가 정하는 특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
 - － (보장성보험료)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(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)에 지급한 금액을 유형에 따라 12%(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%) 세액공제(각각 연 100만원 한도)
 - － (의료비) 근로소득자가 본인, 6세 이하,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지출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%(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) 세액공제
 - － (교육비)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 제외)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및 입양자(연령요건 미적용)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의 15% 세액공제
 - － (기부금) 거주자(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신고자)가 지출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유형별로 15/30%(1천만원 초과분) 세액공제를 적용
 - － (표준세액공제)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13만원, 근로소득 없는 사업소득자는 7만원(성실사업자 중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 미신청자는 12만원) 세액공제

[표 1] 현행 특별세액공제의 주요 내용

공제대상 지출 구분	주요내용
보장성보험료	근로소득자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지출에 대해 12%(장애인보험은 15%) 세액공제(각각 연 100만원 한도)
의료비	의료비 지출대상(일반의료비, 본인 등 의료비,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)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를 및 공제한도 적용
교육비	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 제외)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및 입양자(연령요건 미적용)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의 15%를 세액공제하되,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(직계존속 포함)는 지출 전액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,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
기부금 공제	유형별 기부금의 15%(단 1천만원 초과지출 시 30%이며 2024년 중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% 적용) 세액공제
표준세액공제	근로소득자(항목별 공제 미선택) 13만원, 사업소득자 7만원(성실사업자 중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 미신청자는 12만원) 세액공제

자료: 「소득세법」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골프장 제외)에 지출한 금액의 15%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
 -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,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 결정·연말정산하는 때부터 적용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소득세 감소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추정이 곤란함

-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금액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- 그러나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발생할 체육시설 지출의 추가적인 규모와 이로 인해 발생할 세액공제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자료가 부족
 - 「재정패널조사」(조세재정연구원)에서 체육활동비 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가구별 지출의 합산금액만을 조사하고 있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거나 이로써 발생할 세액공제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
 - 기타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사(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민생활체육조사」) 등에서 월평균 생활체육활동 지출경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체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지출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	장 박 연 서
추계세제분석관	문 석 휘
연 락 처	02-6788-4669
	slugnoid@nabo.go.kr
